

최신 ESG 정보공시 동향과 그린워싱*

Recent ESG Disclosure Trends and Green Washing

김동수**

I. ESG 정보공시 동향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ESG 정보 수요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은 ESG 정보공시에 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표준기관, 각국의 규제기관,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 산업계 이니셔티브 등을 중심으로 ESG 정보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ESG 정보공시 제도화는 1)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규제, 2) 금융기관의 시장논리를 활용한 간접규제, 3) 산업계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상호 모니터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규제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기반의 방식이 있고, 특정규모 또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화 방식이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규제는 투자/대출 등 금융거래에 있는 기업에게 ESG 정보공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써, 2021년 3월 EU의회에서 시행한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은 금융기관에게 거래대상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규제 방식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계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상호 모니터링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간 ESG 리스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RBA(전자산업),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산업), GeSI(IT산업) 등 글로벌 주요 이니셔티브는 ESG 성과관리와 함께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공통 적용 공시사항으로는 사회분야의 노동, 인권, 공급망과 환경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전략과 탄소중립 성과를 들 수 있다.

* 이 글은 2022년 3월 16일(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주최한 2022년 상반기 정책세미나 'ESG 경영 동향과 중소기업 대응전략'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 경제 상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E-mail: dongsoo.kim@kimchang.com

1.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

최근 글로벌 ESG 정보공시는 기업의 자발적인 ESG 정보공시를 유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ESG 정보공시를 강제하는 의무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5년 세계 거래소연맹(WEF)은 상장기업 ESG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대만(2014), 홍콩(2015), 싱가포르(2016) 등 일부 거래소는 상장기업 ESG 정보공시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였다. 나아가 일부 국가는 정부 차원의 ESG 정보공시 의무 규제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1월 EU가 채택한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는 ESG 정보공시 방법을 CoE(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여 기업에게 선택적 정보공시 권한이 부여됨과 동시에 정보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 2021년 4월 제안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는 필수 지표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 착수하는 등 ESG 관련 정보공시 의무 규제화 동향이 확산되고 있다. 하반기 최종 의무공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직접(Scope 1) 또는 간접(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협력업체가 포함되었거나 협력업체 배출량이 큰 경우 공급망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Scope 3)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3월 31일(미국 현지시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기준서를 초안의 형태로 발표했다. 7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2. ESG 의무공시가 갖는 의미

ESG 의무공시에 대해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ESG 의무공시는 1) 정보공시 경계(보고범위)의 명확화, 2) 필수 정보공시 항목 규정, 3)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기반의 디지털화, 4) 제재 규정 포함이라는 공통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기업은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필수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단지 공시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 공시되는 지표에 대한 성과관리와 함께, 디지털화를 전제로 ESG 정보공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제 기업이 공개하는 모든 ESG 정보는 추적이 가능하며, 기업간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이제 ESG 정보공시가 법적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누가 ESG 정보공시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최근 논의되는 글로벌 ESG 정보공시 기준들은 ESG 정보공시는 재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책임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결국 글로벌 ESG 정보공시 동향의 변화는 ‘책임있는 ESG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ESG 정보공시 동향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가지 점에서 글로벌 ESG 정보공시 동향과 유사한 맥락이 확인된다. 첫째는 필수공시 항목의 규정이다. 지금까지 ESG 정보공시는 자율공시의 형태로 추진되며 어떤 정보를 공시할 것인지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다. 그러나 일부 공시 지표의 경우 선택권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탄소중립, 공급망, 노동/인권, 제품책임 이슈 등 필수 공개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표에 대한 사전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공시정보의 디지털화이다. ESG 정보공시를 하는 기업은 이제 공개되는 모든 ESG 정보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축적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공개된 A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폐기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B 분석기관의 자료를 보면 A 기업의 폐기물량 가운데 특정 사업장 정보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물론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ESG 정보를 취합하여 사업장별 생산량 변화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한 B 기관의 분석자료는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기업의 ESG 정보는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기업의 ESG 정보 신뢰성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향후 ESG 정보공시는 서술적 표현 중심의 정보보고(Descriptive reporting)가 대폭 축소되고, 검증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량화된 정보공시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시장에 유통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업은 공시되는 ESG 정보에 대해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그리고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 원칙에 위반되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하게는 법정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II. ESG 정보공시를 위한 해결과제

1. ESG 정보공시와 제도적 디커플링(Institutional Decoupling)

제도적 디커플링이란 조직이 제도화된 공식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범과 가치체계에 순응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만, 실제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ESG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증가로 이어지며 ESG가 여러 기업에 의해 추진되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기업이 실제 필요에 의해서 ESG 활동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업들과

유사한 ESG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가능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직 동형화(Isomorphism)의 결과로 ESG를 도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다수의 기업이 유사한 구조의 ESG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ESG 정보공시를 통한 그린워싱(Greenwashing)이 있다.

2. ESG 정보공시를 통한 그린워싱(Greenwashing)

ESG 정보공시를 통한 그린워싱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디커플링과 그린워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ESG 정보공시에 있어 제도적 디커플링은 ESG 정보공시를 위해 조직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과 같은 ESG 정보공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ESG 정보공시가 실제 조직의 ESG 성과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워싱(Washing)은 실제 조직의 ESG 성과에 조작적 의미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제도적 디커플링이 실제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면, 워싱은 실제 성과를 조작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워싱의 개념으로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있다. 말그대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에 조작적 의미를 부여하여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ESG 정보공시에 있어 제도적 디커플링의 경우 내부 효율성의 문제일 수 있으나, 워싱은 경우에 따라 공정경쟁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3. 다양한 ESG 정보공시 워싱의 문제

워싱의 사전적 의미는 ‘더러운 것 또는 지저분한 것을 가리는 행위’를 뜻하지만 ESG 워싱은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식이나 홍보를 통해 실제 성과를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왜곡하여 조작한 경우를 말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워싱의 개념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조작하는 그린워싱이 있다. 그러나 최근 ESG가 확산되며 다양한 형태의 워싱 개념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보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표1 참조). ESG 워싱의 유형: 1) 제품이나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조작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2) 인권, 양성(Gender) 문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참여를 공언하고 실제 이행하지 않는 화이트워싱(White washing), 3) 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 또는 영향을 실제 보다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임팩트워싱(Impact washing), 그리고 반대로 4) 실제 ESG 성과는 뛰어나지만, 오히려 성과를 축소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브라운워싱(Brown washing).

<표 1> ESG 위성의 유형

Type	Gaps between	Area	Problem
Green washing	Communication and Actual Performance	Environment	Possibly Legal
White washing	Commitment and Actual Implementation	Social	Reputational
Impact ashing	Communication and Actual Impact	Societal	Reputational
Brown ashing	Actual Performance and Communication	ESG	Reputational

4. ESG 정보공시 위성에 대한 대응방안

대부분의 경우 ESG 위성에 대한 논란의 원인 제공이 기업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ESG 위성의 논란의 피하기 위해서는 왜 ESG 위성 논란이 발생하며, 어떻게 이러한 논란을 줄일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ESG 위성은 기업의 ESG 커뮤니케이션 ‘Saying’과 실제 실행 또는 성과 ‘Doing’간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기업의 내부 정보에 제한적인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기업 내부의 ESG 활동 정보를 광고, 홍보자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과 같이 기업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료를 축적하여 실제 성과와 차이를 비교하는 Saying-Doing 분석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은 Saying-Doing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Saying-Doing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Saying-Doing간 차이를 최소화 또는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실제 실행, 즉 Doing 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Saying’을 통제하는 것이다. Saying-Doing간 차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간결하고 확실한 방법이며, ESG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아니 취해야 하는 다른 하나는 ‘Doing’을 통제하는 것이다. Doing은 기업의 ESG 활동성과에 해당한다. ESG 정보공시를 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 비교가능성으로 인해 부족한 성과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빈번하게 Saying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ESG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다. 사실 ESG 성과가 뛰어나다면 ESG 성과를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왜곡하는 Saying의 문제는 현격하게 줄어 들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포장하여 대응하는 것도 부족한 성과를 포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ESG 의무공시가 눈앞에 다가왔다. ESG 정보공시가 디커플링 되지 않으려면 기업은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ESG 성과관리에 나서야 한다. ESG 정보공시가 위성되는 이유도 성과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때문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2025년부터 시작이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시계열 정보를 2025년

에 공시해야 함으로 실제 ESG 성과관리는 2022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SG 정보공시의 핵심은 ESG 성과관리 즉 Doing에서 시작해야 하며, 체계적 프로세스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Saying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ESG를 향한 기업의 진정성이 핵심이다.

참고문헌

- 김동수 · 차현진 · 박상찬(2017),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의 과제와 전망: 제도적 디커플링 (Institutional Decoupling) 연구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25(3), 121-150.
- Meyer, J. W., & Rowan, B.(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363.
- European Securities & Markets Authority(2020.04), ESG disclosures, Joint Consultation Paper.
- EU(2021. 04),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3/34/EU,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Regulation (EU) No 537/2014,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 WFE(2015.10), ESG Recommendation Guidance and Metrics.